
상업대리법에 대한 1984년 제82호 개정법

제1조 1977년 제26호 상업대리법의 개인상인에 관한 제3조(가)항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:

(가) 오만국적을 가진 오만국민이거나 오만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한 만 3년이 지나고 오만에서 고정적으로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.

제2조 이 규정은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포일: 1984년 10월 24일